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4327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432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5131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20. 3. 26.

판결 선고 2020. 4.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51310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법적인 유사수신 금전거래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 기기를 매도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위 기기들을 위탁받아 그 이용권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가 소외 회사의 투자금 유치 및 그 수당의 지급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오로지 소외 회사의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완전히 가장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실제 존재하는 건강기기 등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5)가 작성되는 등 거래의 외관이 형성된 점을 볼 때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선준

판사성충용

판사김세종

별지

1)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